

2022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 기획과제 시행 공고 안내서

2022. 7. 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 2022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 기획과제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2
2. 세부 지원내용	3
3. 일반 및 유의사항	5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10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11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12
4. 기타	14
III.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16
2. 평가항목 및 배점	17
3. 평가점수 산정방법	18
4. 가점 및 감점 기준	19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1
2.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21
3.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25
4.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25
5. 기타	26
V. 신청 관련 Q&A	28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30

I . 2022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 사업 기획과제 시행 공고

1. 공고 대상

본 공모는 “2022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의 기술개발 기획연구 수행기관을 뽑는 공모이며, 기획과제 수행결과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3년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과제에 참여하게 됨.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은 주거생활환경의 3대 난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참여 멘토단(리빙랩 대상지의 거주자, 시민 등)의 니즈를 반영한 리빙랩을 운영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임.

○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 內 기술개발 기획

과제명	기술기획 분야	기획연구 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22.09~'22.11, (75일)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참고]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 전체 사업 개요

- 총 연구개발기간 : '22.04~'25.12
 - '22년 연구개발기간 : '22.04~'22.12
- 총 사업비 : 27,500백만원 이내
 - '22년 사업비 : 2,311백만원 이내
 -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사업 목적 : 주거생활 분야 3대 사회난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폐기물)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리빙랩 적용검증을 위한 플랫폼 운영과 제도혁신 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체감형 주거환경 조성
- 연구내용
 - 난제해결 기술개발 및 제도혁신을 위한 과제기획과 공모, 리빙랩 운영 플랫폼 구축
 - 난제해결 기술개발 초기기획 및 해결기술 컨셉 도출
 - 난제해결 기술의 평가 및 검증, 평가방법 개발, 기술개발 성과목표 달성 및 사업화

- 최종 성과물
 - 난제해결 기술개발을 통한 성과품 연구보고서
 - 난제해결 기술개발 시제품·서비스 리빙랩 검증 보고서
 - 3대 난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의 저감을 위한 공법·기법, 재료·자재, S/W, H/W, 시스템, 장비·장치 등

2. 세부 지원내용

가. 지원목적

- 「국토교통기술 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 해결사업」에 제시된 주거생활 분야 3대 사회난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폐기물)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도전적이고 실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 및 기반연구지원

나. 지원내용

- **(공모방식)** 산·학·연의 독창적이고 참신하며, 실용화 가능한 기술을 접수선정하여 지원하는 자유공모(상향식) 방식(연구주제 관련 기획과제 접수 선정)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참고1]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하는 세부기술은 자유롭게 제시

<참고1> 기획연구 참고과제명 (예시)

분야명	연구개발기술명
생활소음	기존주택 바닥충격을 저감 위한 바닥 소수선 기술 기획
	천장 구조에 의한 바닥충격을 차단성능 개선기술 기획
	화장실 급배수 등 기존주택 설비소음 개선기술 기획
	단지 및 건물 내 공기전달을 저감기술 기획
	공동주택 생활소음 저감 위한 시공품질 평가 및 관리기술 기획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생활소음 관리기술 기획
실내공기질	생활소음 저감 관련 기술 기획
	주거공간 특성 기반 환기설비 최적화 설계기술 기획
	실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술 기획
	실내 발생 바이오에어로졸 검출 및 확산방지기술 기획
	주방 및 조리 시 발생 오염물질저감 기술 기획
	공동주택 실내활동으로 인한 냄새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기획
	환기 및 공기청정장치 필터효율 향상 및 유지관리기술 기획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냉난방, 환기 및 공기청정 설비 자동제어 기술 기획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기술 기획

생활폐기물	단지 내 재활용품 적정 분리배출 촉진 및 공간절감 위한 지하형 또는 지상형 수거 시스템 기획
	재활용품 적정배출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보상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내 감량 및 배출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배출 기술 기획
	단지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시스템의 배출수질 개선 기술 기획
	불법투기방지 위한 인공지능형 배출자 및 종량제 봉투 인식 기술 기획
	단지 내 폐기물시설 설계기준 정립 기획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부산물 활용 방안 기획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단,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 일반과제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 **(기획 연구단계 일반연구 착수시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제안범위)** 일반연구 종료시 기술성숙도(TRL) 8단계 이상
 - 본 기획과제에서 제안하는 난제문제 해결 기술의 제안범위는 일반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성숙도(TRL) 제시 필요
 - ※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TRL) 참고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주거환경 3대 난제문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해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시민참여멘토단(리빙랩 대상지의 거주자, 시민 등)의 니즈를 반영한 리빙랩 관련 기술개발 내용 포함
 - 상기 연구단계(TRL)를 참고하여 기획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 본 연구는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사전에 선정된 대상지에 적용하여 기술을 검증하는 과제임.
 - ※ 개발한 기술은 대상지의 거주자,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기술의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임 (리빙랩).
- **(기획과제 선정)** 주거환경 3대 난제문제(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분야 별 총 30개 기획과제 선정

3대 난제 해결 분야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
15개 기획과제 내외	10개 기획과제 내외	5개 기획과제 내외

※ 기획과제 선정 수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반과제 수행)** 기획과제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를 통해 일반과제 참여 기관 선정
 - 20개 이내 일반과제 참여기관 선정 (과제당 3년간 10억원 내외)
 - 일반과제 연구기간 : 2023.01.01. ~ 2025.12.31.
- ※ 일반과제 수는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 기획연구과제는 사업 대상 분야(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세부기술을 **연구개발기관이** 단독신청
 - ※ 위탁기관 및 참여기업 형태의 구성
- 기획연구과제의 주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동 공고 안내서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 *은 30-50쪽 이내로 작성
 - 선정평가는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활용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III. 선정평가의 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기획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PPT 등 별도 자료 사용하지 않음)
- **기 수행과제**(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활용방안**을 **기획연구계획**에 포함
 -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성과도서관-과제·보고서 및 www.ntis.go.kr 참고

- 제안하는 연구개발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술·시장동향, 특허 분석 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동향자료-논문·특허·보고서 등 참고
- 최종 기획연구 내용에 **리빙랩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방법 포함**
-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을 따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기획연구과제는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 **기획과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기획 연구기간 : '22년 9월 ~ '22년 11월 (75일)
- 사전기획 및 기획연구는 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부담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항, 운영규정 별표3)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6.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따라 계상범위 확대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아래 표 참고)인 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업태(종목)	업태(종목)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으로써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기획과제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를 통해 선정된 일반과제 참여기관에 한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일반과제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21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세부사항은 “IV.연구개발비 계상기준,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참고

- 보험기간은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6개월이며, 보험료는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단,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

- 연구개발성과의 **리빙랩 적용 및 추진계획**을 필히 검토

- 연구개발성과의 리빙랩 적용을 통한 실용화·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 리빙랩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등)에 상세히 제시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 혁신법 제2조 제3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 관리지침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21.01.01 시행)의 연구책임자의 최대 동시수행 가능 과제수(3개)를 감안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
 -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2 > 내에 있는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란에 신청중(또는 신청 예정)이거나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상세히 작성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II.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구성시 유의사항

- 선의의 경쟁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기관의 복수 기획 과제 참여 가능**

※ 단,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기관이 다수의 기획과제에 지원할 경우, 선정 기획과제 개수가 전체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15% 초과 시에는 선정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과제를 우선 선정

2. 신청서류 접수일정 및 방법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신청서류 접수
'22.07.08(금)~'22.08.08(월) (32일)	'22.07.28(목)~'22.08.08(월) 18:00까지 (12일)

나.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접수일 18시 이전 도착 분에 한함)

다. 접수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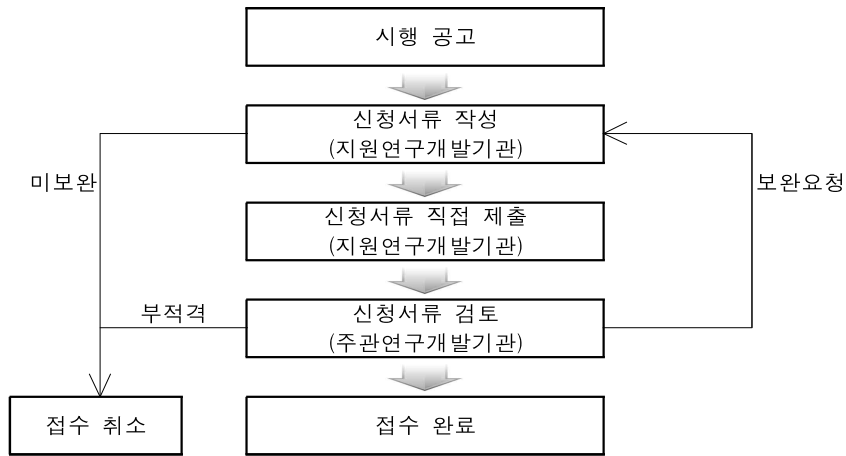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동 제로카본그린홈 802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 김기철 수석연구원 (031-995-0820, kichulkim@kict.re.kr)
김 철 박사 (031-995-0969, chulkim@kict.re.kr)

3.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제2항)

연번	항목	필수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2	기획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책임자 직인 날인)	필수	서식1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2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3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4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기관별)	필수	-
7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해당시	-
8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5
9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해당시	-
10	표준재무제표 증명(최근 2년)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제출	해당시	-
11	신청서류 일체가 수록된 저장장치(USB) *	필수	-

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다.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는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PDF 파일을 일괄 제출

라. 신청서류 작성요령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연구개발기관은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 오류,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음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는 [서식1]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식 내 < 본문 1 >※은 30-50쪽 이내로 작성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전략 및 계획”

마.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제5항 참고)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지원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지원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지원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지원연구개발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원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원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 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절차	방법 및 내용	일정
시행 공고	• 시행 공고(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22.07.08 ~'22.08.08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보완	• 지원연구개발기관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및 보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22.08 초
사전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참여제한 해당 여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22.08 초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 (전문가)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100점 만점) - 과제 취지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등 - (유의사항) 발표자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제출한 기획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 불가)	'22.08 중순
추진위원회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획과제 선정평가 결과 검토 및 고득점순에 따른 예산범위 내 최종과제 확정	'22.08 말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 지원연구개발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된 지원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간 협약체결	'22.08 말
기획과제 연구 수행	• 기획과제 연구 착수	'22.09 - '22.11
기획과제 평가	• 과제평가단 및 시민참여멘토단의 연구개발계획 평가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과제 참여기관 선정 (20개 이내)	'22.11
일반과제 연구수행	•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본과제 연구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 수행	'23.01 - '25.12

※ 신청서류 접수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획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추진할 일반과제의 수는 정부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 (1단계) 부합성·중복성 평가

-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 여부 결정

※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으로 판정 시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 개별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2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책임자 발표(15분 이내)후 질의응답(1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평가 일정 및 계획 통보 예정

평가단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계획 평가단 (전문가)	연구계획의 충실성	•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리빙랩, 사업결과 등)	5
		• 연구계획의 창의성	
		• 연구단계 착수 및 종료시 기술성숙도	
	사회문제 이해도	• 주거환경 난제해결의 필요성(시급성, 공익성, 공공성)	5
		• 국내외 기술적 현황 분석의 적절성	5
		•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분석 내용의 적절성	10
	목표 및 추진체계 타당성	• 연구목표의 타당성·구체성·명확성	5
		• 연구내용 및 문제해결방법의 효과성·타당성	10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타당성·구체성·명확성	5
		• 책임자 역량 및 연구원 구성의 적절성·전문성	5
사용자 참여 계획의 적절성	• 사용자 참여 및 실행 계획(리빙랩 등)의 적절성	15	
제도개선 계획의 타당성	• 법/제도, 인프라 등 제도개선 계획의 타당성	5	
연구성과 활용성	• 연구성과의 현장적용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전달 체계의 구체성 등)	10	
	•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5	
소 계			85

평가단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시민참여 멘토단	지원 기술의 적용 가능성 (5점)	• 지원 세부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지원 기술의 경제성 (5점)	• 기존 대비 지원 세부기술의 경제성 (기술의 가격, 설치비용, 에너지 소모량 등)	5
	지원 기술의 용이성 (5점)	•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용이성	5
소 계			15
총 계			100

※ 기획과제 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평가점수 산정방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점수에 시민참여멘토단 평가점수 총점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점수에 가점

※ 시민참여멘토단은 3인으로 구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조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 안내서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지원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 감염병에 따른 격리 조치로 인해 발표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해당 시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별도 협의 요망)

- 기획과제 선정평가 결과, 예산범위내에서 고득점순에 따른 최종과제 확정

4. 가점 및 감점 기준

-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 가점 및 감점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종합평가 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신기술 또는 녹색인증에 따른 가점	○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58조에 따른 물류신기술을 받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인증 및 확인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녹색기술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참여기관에 포함된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2% 감점

* 혁신법 체제 이전(21.01.01 이전)의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를 의미함

IV.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 연구개발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 각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2.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 항목별 세부 계상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혁신법 시행령 별표2) 및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항목	사용용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1)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2)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항목	사용용도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금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 나목 2)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항목	사용용도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비고 >

-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2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 “박사후연구자”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사람(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 (개요) 연구비 부담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상과제 및 기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기획과제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를 통해 선정된 일반과제 참여기관)
 -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 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
 - ※ 면제 기준 부합 여부는 협약시 별도 협의 요망
-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각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 ※ 보험가입액 세부사항은 협약시 별도 안내 예정
- (보험기간) **각 단계시작일~단계종료일 + 6개월 가산**
 - ※ 연구개발비 정산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가산
-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
- (제출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협약시 제출)

4.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

-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의 지속에 따라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원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 마련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12(2022.01.04.)
- (적용기간) 신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추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검토)
- (인건비 현금 계상 완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5. 기타

- 기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 상기 법령,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V. 신청 관련 Q&A

[Q1] 중소기업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타 서류 불인정)

[Q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2]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학회 또는 협회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

[A3] 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관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받는 연구책임자의 범위는?

[A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봅니다.

[Q5] 회계법인 위탁 정산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5] 위탁 정산 수수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며,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별표 제7호 참고

[Q6] 가점 및 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

[A6]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2.02.17이 접수 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20.02.17~'22.02.17(접수 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7]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A7] 신청인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Q8] 신청서류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8] 신청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류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9] 중소기업·중견기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게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9]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한국연구개발서비스 협회 증명서 발급)는 인건비의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운영규정 [별표 3]의 '인건비 현금 계상기준'에서 제시한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판단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기획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서식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서식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필수
서식5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참고1	연구개발과제명 작성 안내	연구개발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계상시 참고
참고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연구진 구성시 참고
참고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신청자격 근거 확인시
참고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신청자격 근거 확인시
참고8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1의2]	신청자격 근거 확인시

※ 필수사항 : 전체 신청서류의 PDF 파일을 USB에 동봉하여 제출